

—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선산보건진료소 인력보강을 위하여 승인된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정원을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로 지정하여 부족한 인력을 충원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지정내용 : 보건진료원

4. 참고사항

-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규정
- 경북도 자치행정과-5357('04. 7. 2)호의 구미시 보건진료원 정원 승인

5. 검토의견

-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경상북도의 구미시 보건진료원 정원 승인에 의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현행에서 보건진료원을 추가 지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